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132호

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 창위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창원시립예술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단원이 더욱 창원시립예술단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13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7, FAX:055-225-4743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cost403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순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462 발의연월일: 2023. 11. 17.

발 의 의 원: 정순욱·김경희·김남수·김상현·문순규

백승규·서명일·심영석·오은옥·이우완 이정희·이종화·최은하·한은정 의원(14명)

찬 성 의 원: 강창석·김혜란·이해련 의원(3명)

1. 제안이유

창원시립예술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단원이 더욱 창원시립예술단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"시장"을 "부단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"을 "상임단원은"으로, "이를 허용할"을 "부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할"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단원"을 "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단원"으로, "관하여는"을 "관한 사항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단원의 겸직 및 복무) ① 단	제13조(단원의 겸직 및 복무) ①
원은 <u>시장</u> 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	<u>부단장</u>
무를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비상	
임단원의 경우에는 승인을 필요하	
지 않는다.	.
②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	② <u>상임단원은</u>
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	
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	
서 <u>이를 허용할</u> 수 있다.	부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진
	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할
③ <u>단원</u> 의 복무에 <u>관하여는</u> 시장	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단원
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u>관한 사항은</u>

참고 관계 법령

■ 지방공무워법

- 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- 제10조(영리업무의 금지)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,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.
 - 1. 공무원이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
 - 2. 공무원이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私企業體)의 이사·감사·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·지배인·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
 - 3.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 - 4.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
- 제11조(겸직 허가)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■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

제4조(전결대상 사무)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■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[별표 1]

전 결 사 항

〇 문화관광체육국

소 관 별	세 부 사 무 명	담당자	팀장	과장 (담당관)	실국장	부시장	시장
사무합계	51	0	1	18	20	10	2
문화예술과	1.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 수립						0
	2. 문화상 운영						
	가. 창원시 문화상 시상계획 수립					0	
	나. 창원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					0	
	3. 미술 장식품 설치 업무				0		
	4. 시사편찬				0		
	5. 문화산업 업무의 종합기획						
	가. 문화콘텐츠 산업 종합육성					0	
	나. 문화사업조성 추진관리				0		
	다. 전통문화사업 개발육성				0		
	라.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				0		
	6. 음반・비디오물・게임물 관련 업무지도・감독 총괄			0			
	7.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육성			0			
-	8. 종교단체 관련업무						
	가.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				0		
	나. 종교단체 실태조사		0				
	다. 종교단체 행사지원			0			
	9. 문화예술단체 지원						
	가. 민간예술단체 발전계획 수립					0	
	나. 예총 시 지부육성 및 각종 행사지원			0			
	다. 민간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			0			
	10. 문예진홍기금 운영관리						
	가. 문예진훙기금 신청접수			0			
	나. 문예진홍기금 신청취합 요구			0			
	11.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						
	가. 시립예술단 모집 및 운영계획					0	
	나. 시립예술단원 전형 심사위원 선정				0		
	다. 시립예술단원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			0			
	라. 시립예술단원 복무에 관한 사항			0			
	12. 시립예술단 연주회(공연)개최						
	가. 기본방향 결정				0		

○ 문화관광체육국

소 관 별	세 부 사 무 명	담당자	팀장	과장 (담당관)	실국장	부시장	시장
사무합계	27	0	0	9	12	5	1
	나. 구체적 연주계획 수립 및 시행			0			
	13. 예술단원 평가						
	가. 예술단원 자체평가 계획				0		
	나. 예술단원 자체평가 실시			0			
	14. 시립예술단 위·해촉					-0 -1	
	가. 간부(지휘자,안무자)					0	
	나. 단원				0		
	15.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						
	가. 예술공간 조성계획 수립					0	
	나. 예술공간 관리, 운영				0		
	16. 문화재 이외의 시설 영선 관리			0			
	17. 지명위원회 및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운영				0		
	18. 향토지 발행 및 향토사 연구, 조사, 발굴 보존			Ĵ			
	가. 향토지 발행				0		
	나. 햠토사 조사, 연구			0			
	19. 문화원 관리			0			
	20. 문화예술 충무계획		32		0		
	21. 창원 아동문학 세계대축전에 관한 사항						
	가. 종합계획 수립		3		52	0	
	나. 세부계획 추진			0			
	그 창원인물 재조명 사업 추진			0		S 1	
	23. 문화도시 전략 수립 및 추진						
	가. 종합계획 수립		0.	10	8	5	0
	나. 기본계획 수립					0	
	다. 세부추진계획 수립			100	0		
	라. 세부추진계획 실행			0			
	24. 문화예술 관련 전략 수립 및 관광자원화					5	
	가. 기본계획 수립					0	
	나. 세부추진계획 수립			5	0	-	
	다. 세부추진계획 실행			0			
	25. 창동예술촌 관리·운영			Ť	0		
	26. 창동예술촌 프로그램 개발지원, 인프라 구축				0		
	27.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지원 운영			- S-	0		
	28. 창동르네상스 방송국 운영지원				0		

■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

제4조(단원의 의무)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1. 복종의 의무: 단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- 2. 품위 유지 의무: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3. 보안 유지의 의무: 직무상 취득한 사무 중 예술단에 중대한 손실을 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4. 겸직 금지 의무: 단원은 단장의 허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, 상임단원은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단체와 단 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고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.
- 5. 다른 단체 출연 금지 의무: 단원은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주관하는 공연, 강의 외 외부단체에 출연할 수 없다. 다만,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참고 현행 조례

■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 창원시립예술단(이하 "예술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 체를 둔다.
 - 1. 창원시립교향악단(이하 "교향악단"이라 한다)
 - 2. 창원시립합창단(이하 "합창단"이라 한다)
 - 3. 창원시립무용단(이하 "무용단"이라 한다)
 - 4.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(이하 "소년소녀합창단"이라 한다)
 -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,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.
 - ③ 각 예술단체의 일반사무, 홍보, 마케팅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사무팀을 둘 수 있다. 또한, 전체 사무팀 정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관련 사업, 예술단체간 균형발전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.
 - ③ 교향악단, 합창단, 무용단의 예술감독(이하 "예술감독"이라 한다), 소년소녀 합창단의 상임지휘자(이하 "지휘자"라 한다)는 단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예술 단체를 지휘·감독하며 공연기획, 출연자 선정, 고객관리, 예술 강좌, 홍보·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④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장은 공연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단원 관리 및 일반행정, 홍보·마케팅, 회원관리 등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.
 - ⑤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 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

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: 단장
- 2. 부위원장: 부단장
- 3. 당연직 위원: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, 예술단업무 소관 부서장,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
- 4. 위촉직 위원: 예술단원 1명,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4조의2(징계위원회)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되,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.
 - ② 징계위원회의 권한,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지방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에 따른다.
 - ③ 징계의 종류,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「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」에 따른다.
- 제5조(예술단원의 종류) ① 예술단의 단원 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.
 - 1.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.
 -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.
 - 1. 출연단원은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.
 - 2. 비출연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단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수습단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자격과 위촉)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
- 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- 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(외국인 포함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제7조(전형의 방법) ① 전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전형은 서류심사, 실기, 면접으로 구분되며, 면접은 서류심사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과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공개전형의 채점 기준 등 상세 사항은 전형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④ 시장은 출연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을 필요한 경우 내부전형을 통해 비출연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8조(전형위원) ① 단원의 신규 위촉과 정기 실기평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며, 전형위원은 전형할 때마다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따로 위촉한다.
- 제9조(위촉연령)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. 이 경우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해당 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촉기간)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.
- 제11조(재위촉) ① 단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 단, 계약직으로 위촉한 단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해촉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.
 -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
 - 3.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

- 4. 징계위원회에서 해촉이 결정된 사람
- 5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
- 6. 개인 기량향상을 위한 무급휴직기간이 전 위촉기간 내 총 3년을 초과한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
- 2. 단원으로서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람
- 3.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
- 4.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
- 5.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
- 6.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
- 7.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
- 8. 고의 또는 과실로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
- 9.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
- ③ 삭제
- 제13조(단원의 겸직 및 복무) 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.
 - ②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 -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3조의2(명예퇴직)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 제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절차 및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 삭제

- 제15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, 제 수당, 복리 후생비,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위촉직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입장료 및 외부공연 출연료)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

- 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공연 입장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공연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.
- 제17조(입장권) ① 유료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.
 - ② 공연별로 행사운영, 각종 민원 및 사고에 대비한 유보석 확보를 위해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무료입장권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8조(공연사업 주관) ① 시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사업의 종류,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9조(휴단 및 휴직) ① 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1개월 이상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기간 휴단할 수 있다.
 - ② 예술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 기간 전 단원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휴단 및 휴직기간 동안 단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「근로기준법」제46 조를 준용한다.
- 제20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르며, 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수탁 운영자의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.
 - ③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